

## 2015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·중견기업의 혁신기술과 디자인 융합으로 2~3년 앞단의 미래시장을 예측하여 디자인전략 및 상품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「2015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」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3월 26일  
중소기업청장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들에게 디자인을 통한 미래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다양한 상품정보를 활용하여 전략적 미래상품 및 선행 디자인을 개발하여 글로벌 미래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지원 사업

#### □ 지원규모 : 14억원

#### □ 지원내용 :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개발

#### □ 지원대상

-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 
\* 예 : WC300기업, 글로벌강소기업 등

#### □ 지원분야 : 미래시장 창출 기회가 높은 분야

- ① 고령화 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분야 (건강, 의료분야 등)
- ② 안전하고 스마트한 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분야(스마트 가전, 로봇, 안전모니터링 시스템, 보안, 이동수단 관련 등)

- ③ 지속가능한 자연과 사회 분야 (에너지 관련 시스템 등)
- ④ 기타 ICT 기반의 미래 Life-context 창출 분야 등

## 2. 지원내용 및 조건

- 미래 소비자를 비즈니스 주체로 전환하여 미래환경과 고객 Life Context 분석,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수립 및 이를 통한 디자인 개발
- 미래전략 디자인
  - 향후 2~3년 후의 미래 소비자의 Core Needs를 분석하여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, 소비자 라이프스타일, 트렌드, 시나리오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

[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단계별 추진내용]

구분		주요 연구내용
① 미래 환경 예측	STEEP 중심의 거시 환경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향후 3년 내외의 사회, 기술, 환경 동향분석</li> <li>• 중소기업 대상사업의 산업 환경 및 동향분석</li> </ul>
	Mega Trend 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별 대상시장별 Desk Research 및 미래 예측 데이터 분석 후 미래 트렌드 정립</li> </ul>
	포커스 Feature 및 Life style 키워드 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시환경과 미래 트렌드 분석을 통한 기업의 기회요소 및 핵심 소비자가치 도출</li> </ul>
② 미래 고객 Needs 분석	Micro Trend 연구 및 가설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 고객집단, 분야별 세부 트렌드 예측</li> <li>• 세부 트렌드별 기회요소 도출 가설 정의</li> </ul>
	Expert Dynami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가치창출 기회요소 도출,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필터링</li> </ul>
	미래고객가치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별 대상시장 고객의 Needs를 정립하고 창출 가치 도출</li> </ul>
③ 미래 가치 창출 UX 시나 리오	미래가치창출 Concept 전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시장 고객별 가치창출 Concept 전개</li> <li>• 유사 미래시장 벤치마킹</li> <li>• 미래고객 맞춤형 컨셉 도출</li> </ul>
	미래 시나리오 아이디어 워크숍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Concept별 가치창출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 (디자이너, 기업, 분야별 전문가 참여)</li> </ul>
	미래고객 체험가치(UX) 시나리오 및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가치창출 아이디어별 고객체험 시나리오 도출 및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연구</li> </ul>

## ○ 선행디자인개발

- 미래디자인 전략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·중견기업이 2~3년 이후에 상품화 할 수 있는 미래제품(Future Product) 디자인과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
  - ① 제품 디자인개발 : 미래디자인 전략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가치창출 Concept을 구체화 하여 아이디어 스케치, 렌더링, 모델링, UX 디자인, 적용기술 정립을 구체화하는 미래제품 디자인개발
  - ② 사업화 전략모델 개발 : 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

### [선행디자인개발 단계별 추진내용]

구분	주요 연구내용		
① 제품 디자인개발	Concept Development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가치창출 Concept 별 구체화</li> <li>• 미래가치창출 콘텐츠(제품) 개념 확립 및 상품화 방향 정립</li> </ul>	
	Ideatio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가치창출 제품 아이디어 개발</li> <li>• 미래가치창출 제품 구성요소 적용 연구 (적용기술, 소재, 후가공 등)</li> </ul>	
	Visualizatio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제품 Technical Drawing</li> <li>• 미래제품 2D / 3D Rendering</li> <li>• 미래제품 구성요소 및 Spec 적용 연구</li> </ul>	
	Prototype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워킹 Mock-up (시제품)개발</li> <li>• 미래제품 구현 기술적용 연구</li> </ul>	
② 사업화 전략 모델개발	미래가치창출 플랫폼 가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 고객집단 별 비즈니스 창출 플랫폼 정립</li> <li>• 대상 플랫폼 별 미래 고객집단 세분화</li> </ul>	
	미래 비즈니스 영역 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선 사업화 비즈니스 창출 영역 연구 및 세분화</li> </ul>	
	미래 비즈니스 전략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별 미래시장 확정 및 사업화 전략 수립</li> <li>• 미래 사업별 관계가치사슬 연계방안 정립</li> </ul>	

## □ 지원조건

과제구분	지원금액	개발기간	지원 비중	기타
미래상품 디자인전략	1.4억원 이내	6개월 내외	총사업비의 60~75% 이내	민간부담금의 20% 이상 현금부담
선행디자인개발	1.2억원 이내	5개월 내외		

\* 정부지원금 범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

- 기업부담금 :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5%,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40%

## 3. 참여기관 자격요건

### □ 협력기관(1) : 디자인전문기업, 컨설팅 및 리서치 전문기업 등

- 디자인기획 및 전략수립, 조사,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전문기업(기관), 마케팅전문기업(기관), 경영전문기업(기관), 전략수립전문기업(기관),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

### □ 협력기관(2) : 디자인전문기업

- 디자인전문기업 :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
  - \* 확인방법 : <http://designfirm.kidp.or.kr>에서 '전문회사조회' 메뉴를 통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확인가능
  - \* 우수디자인전문회사 ('14년 ~ '15년) 가점부여

구 분	주요 역할	담당기관
수행기관	과제선정, 협약체결,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, 현장평가, 과제일부 참여, 사업추진점검 등 과제 관리	한국디자인진흥원
협력기관(1)	미래전략디자인	리서치, 마케팅, 컨설팅 디자인전문기업 등
협력기관(2)	선행디자인개발	디자인전문기업

## 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'15.3.26(목) ~ '15.4.27(월), 18:00까지

□ 과제 신청절차

-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기관1(리서치 및 컨설팅 전문회사 등)과 협력기관2(디자인전문회사)간의 자율 매칭후 수행기관(한국디자인진흥원)에 신청

□ 신청방법

-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

- 중소기업청([www.smba.go.kr](http://www.smba.go.kr)), 기업마당([www.bizinfo.go.kr](http://www.bizinfo.go.kr)),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, 한국디자인진흥원 ([www.kidp.or.kr](http://www.kidp.or.kr)) 홈페이지 공고 참조

- 접수처 :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즈니스지원센터(접수확인 : 070-4698-6013)

\*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(원본 1부, 사본 9부)  
\* 주 소 : (우)305-50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8로 49 (용산동 546번지)  
\*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  
\* 마감일 18:00까지 신청서(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) 제출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5. 과제평가 및 추진절차

□ 평가 및 지원기여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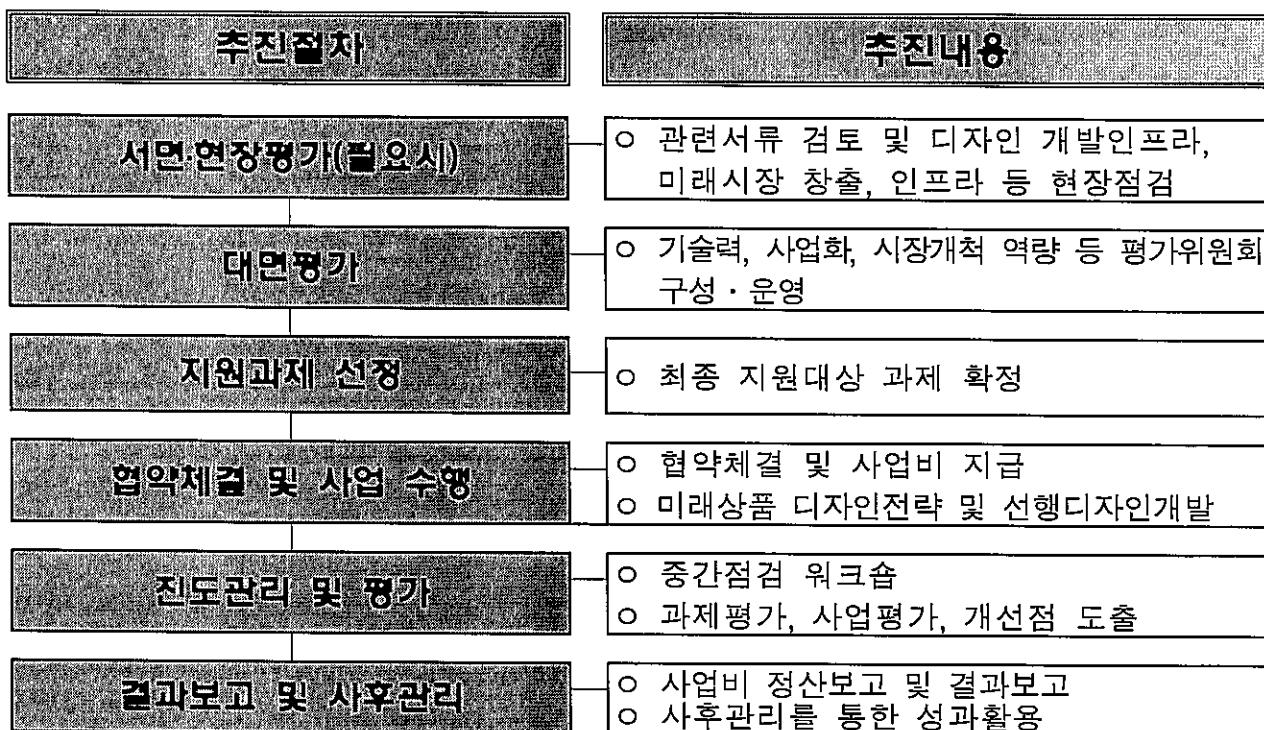
- (평가) 글로벌 상품이 가능한 제조업 중심(협력기관 컨소시엄 포함)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을 선정
  - \* 협력기관 : 리서치, 컨설팅, 마케팅 및 디자인전문기업 등
  - 기업의 재무 건전성, 수출경쟁력, 사업화 역량, 경영능력 등

- 해당제품과 관련하여 개선된(혹은 새로운) 기술성, 기능성, 사업화 가능성 및 서비스 모델이 디자인과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등
- (평가위원회 구성 · 운영)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· 운영
  - \* 평가위원(7인 이내) : 산업계, 학계,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
- (우대조건) 히든챔피언 후보기업, 비수도권 소재기업, 희망엔지니어적금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우대가점 부여

구분	기준	점수
히든챔피언 후보기업	World Class 300 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, 글로벌 전문기업, 지역형 강소기업	5
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내일채움공제	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성과보상기금(내일채움공제) 가입기업 * 매출액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5점 부여 예시) 매출 1,000억, 5명 가입 → 2.5점 부여	5
비수도권 소재 기업	서울·인천·경기를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	3
우수디자인전문회사	우수디자인전문회사 등록업체('14~'15)	3

\* 우대가점은 기업당 최대 10점

## □ 추진절차



## 6. 지원제외 사항

### □ 지원제외

- 사업에 참여하는자(주관기관, 협력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|  |
|--|
| ① 기업의 부도   |
|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|
|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|
|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|
| ⑤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|
|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|
| ⑥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* 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|
| ⑦ 자본전액잠식   |
| ⑧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  |

-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## **7. 기타 공지사항**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관, 협력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동 사업은 주관기관(중소·중견기업)이 협력기관(1, 2)을 반드시 연계 후 신청해야 함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'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운영지침'에 따른다.

## **8. 문의처**

- 상담 및 문의처

구 분	담당부서	연락처
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	한국디자인진흥원 비즈니스지원센터	070-4698-6013

# 2015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신청서

1. 과제명					
2. 지원기업	기업명		기업구분	중소( ), 중견( )	
	설립년월일		상시종업원수(명)		
3. 지원기업 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	
	주 소				
4. 지원기업 총괄책임자	주생산품				
	성 명		생년월일		
5. 개발기간	직 위		휴대전화		
	파 스		전 화		
6. 사업비 (단위: 천원)	이 메 일				
	성 명		생년월일		
7. 협력기관1	직 위		휴대전화		
	파 스		전 화		
7. 협력기관2	이 메 일				
	성 명	부서 직위	전 화	휴대전화	e-mail
7. 협력기관3	기업(관)명	대 표 자	전 화	주소	
	성 명	부서 직위	전 화	휴대전화	e-mail
8. 협력기관4	기업(관)명	대 표 자	전 화	주소	
	성 명	부서 직위	전 화	휴대전화	e-mail

※ 지원기업은 본 과제 사업공고의 주관기관을 의미함.

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 
아울러, 동 사업신청 및 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, 만약,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,  
협약 해약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협력기관명(1) :

대표자 : (인)

협력기관명(2) :

대표자 : (인)

협력기관명(3) :

대표자 : (인)

주관기관 대표자 : (인)

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

\* 협력기관 수에 맞게 양식 수정 가능

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

2015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 사업계획서

2015.

업 체 명

## 사업계획 요약서

※ 최종 제품(기술) 내용·용도 및 목표 시장의 정의, 경쟁제품(기술)과의 차별성, 예상 시장규모 및 경제적 기대효과, 디자인개발전략 및 추진방안, 사업화 보유역량에 대해 2~3페이지 분량으로 요약·기술

### 1. 최종 제품(기술) 개요

### 2. 개발필요성 및 경쟁제품(기술)과의 차별성

### 3. 예상 시장규모 및 경제적 기대효과

### 4. 제품(기술)에 대한 디자인개발전략, 추진방안

### 5. 사업화 보유역량 (성공사례 등)

### 6. 사업예산

- 총사업비 : 천원  
(정부지원금 : 천원 / 민간부담금 : 천원)
- 인건비 : 천원
- 직접비 : 천원

# 목 차

<b>1. 디자인개발 대상 제품(기술) .....</b>
가. 대상제품(기술)의 개요 .....
나. 대상제품(기술)의 디자인개발 필요성 .....
<b>2. 추진배경 및 기술 확보 현황 .....</b>
가. 추진배경 .....
나. 디자인개발 및 사업화 성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.....
다. 사업화대상 제품의 기술개발 수준 .....
<b>3. 개발목표 및 내용 .....</b>
가. 최종 개발목표 .....
나. 개발내용 및 범위 .....
<b>4. 추진전략 및 체계 .....</b>
가. 추진전략 .....
나. 사업추진 조직도 .....
다. 사업추진 일정 .....
<b>5. 사업화 계획 .....</b>
가.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.....
<b>6. 총 사업비 현황 .....</b>
가. 사업비 구성현황 .....
나. 사업비 사용 계획 .....
<b>7. 사업비 세부내역 .....</b>
가. 사업비 총괄 .....
나.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.....
<b>8. 기관 현황 .....</b>
가. 참여인력 현황 .....
나. 기업(기관) 정보 현황 .....

## 1. 디자인개발 대상 제품(기술)

### 가. 대상제품(기술)의 현황

※ 예시) 제품유형, 제품구성 핵심기술, 대상소비자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상세내용 등

### 나. 대상제품(기술)의 디자인개발 필요성

※ 예시) 글로벌 브랜드 가치창출 가능성, 미래시장에서의 디자인 Needs 등

## 2. 추진배경 및 기술 확보 현황

### 가. 추진배경

1) 해당 제품관련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등

2) 디자인을 통한 사업화 경쟁력

### 나. 디자인개발 및 사업화 성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

1) 기술적 측면

2) 산업·경제적 측면

3) 사회적 측면

### 다. 대상제품의 기술 개발 수준

※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는지 서술 (필요시 사진, 이미지 등 포함)

## 3. 개발목표 및 내용

### 가. 최종 개발목표

1) 정량적 목표

※ 최종산출물에 대한 상세내용 (예,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보고서, 사업화 전략보고서, 렌더링 0건, 목업 0건, 워킹목업 0건, 지식재산권 출원 0건 등)

## 2) 정성적 목표

※ 디자인전략 및 선행디자인 개발을 통해 달성을 가능한 것 (예, 원가절감, 생산공정 개선, 생산성 향상 등)

### 나. 개발내용 및 범위

※ 본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인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

(범위 및 내용, 계획상품 내용 및 용도, 기존제품과의 차별성, 기존제품(기술)과 디자인의 융합기술 접목방법 등) 기재

#### 1) 디자인전략 개발을 위한 수행 계획

※ 전략수립을 위한 리서치 및 컨설팅·자문 방법 등 기재

#### 2) 선행디자인 개발을 위한 수행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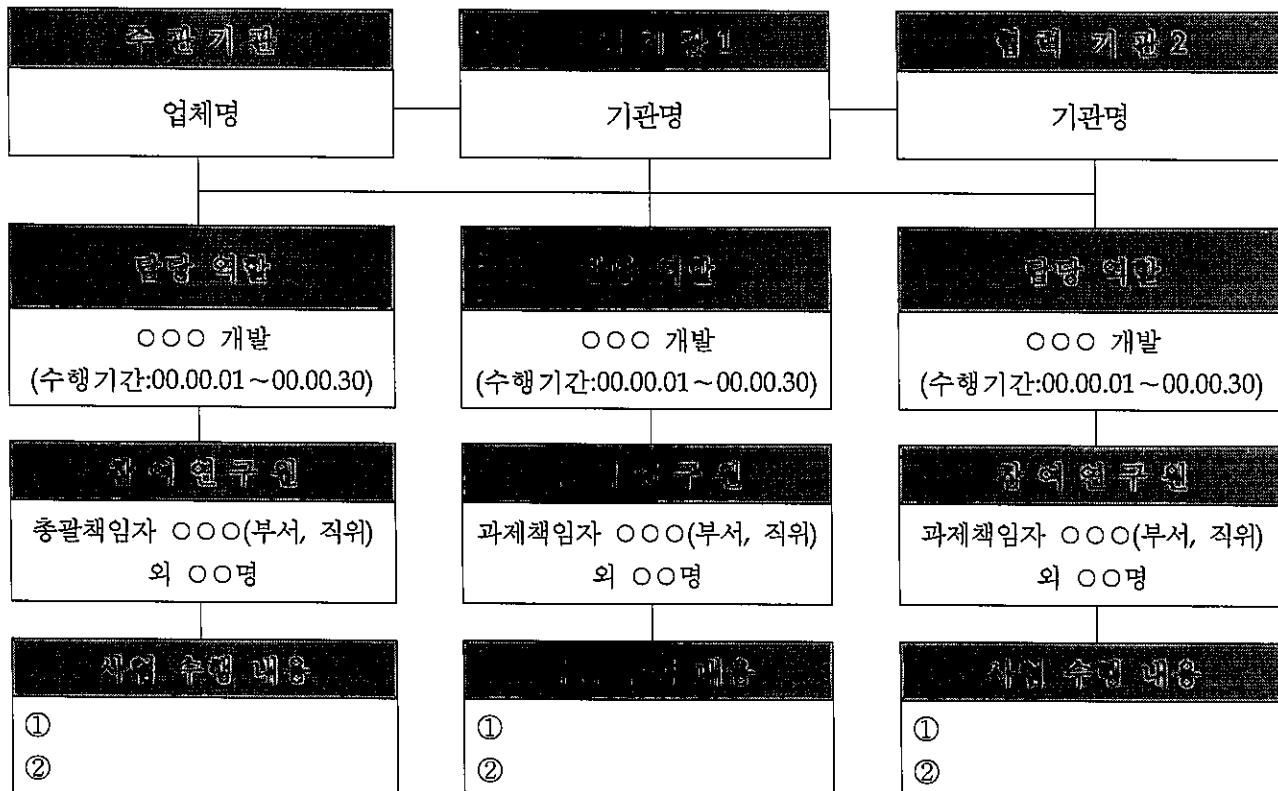
※ 디자인 개발 방법 및 사업화 전략 모델 개발 방법 등 기재

## 4. 추진전략 및 체계

### 가. 추진전략

※ 차별화된 추진전략 및 방법 제시

### 나. 사업추진 조직도



#### 다. 사업추진 일정

일련 번호	사업 내용	추진 일정							기간 (주)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.....	
1	예) 시장조사 - 기초자료 문헌조사.....								
	예) 개발완료일								
계									

※ 추진일정의 소요기간은 그래프 형태로 표기

### 5. 사업화계획

#### 가.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

##### 1) 디자인개발 제품이 목표로 하는 국내외 주 시장 및 주요 고객

※ 목표 고객집단이 누구이며 계획상품이 충족시켜야 할 고객의 편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

##### 2) 경쟁상품 및 경쟁사 개요

※ 관련시장 동향 및 가치, 관련분야 분석 및 진단 포함

##### 3) 국내외 예상 시장규모

※ 시장 분석, 목표시장의 선정, 사업성 분석, 마케팅 및 판로확보 등의 사업화 추진경위 및 현황/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확대를 위한 사업화 전략 및 일정 등 기재

### 6. 총 사업비 현황

#### 가. 사업비 구성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	금액	비율
합계(A+B)		
정부지원금(A)		
민간부담금 (B)	현금	
	현물	

※ 정부지원금은 중견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60%이내, 중소기업의 경우 75% 이내 지원

※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20%이상 부담

## 나. 사업비 사용 계획

(단위 : 천원, %)

사업비 사용 계획		예산액		기타	
내부인건비					0.0
외부인건비					
소 계					
연구장비·재료비					
연구활동비					
디자인정보 조사비					
소 계					
					100.0

## 7. 사업비 세부내역

### 가. 사업비 총괄

(단위: 천원, %)

사업비 세부내역		예산액		기타	
		100	해당 없음	100	해당 없음
			해당 없음		해당 없음
			해당 없음		해당 없음

나.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(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모두 작성)

1) 인건비 소요명세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성명	직위	실적 급여 (A)	참여율 (%) (B)	참여 기간(월) (C)	합 계 (A×B×C/100)
내 부 인건비	주관 기관						해당 없음
							해당 없음
							해당 없음
	소 계						
외 부 인건비	협력 기관						해당 없음
							해당 없음
							해당 없음
	소 계						
합 계							

## 작성요령

- 가)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, 협력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구분한다.
- 나) 인건비 기준단가는 협력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.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,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)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참여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.
- ① 과제책임자는 30%이상, 참여연구원은 10%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, 수행기관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참여과제수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참여기관 내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.
- 라) 디자인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총 디자인개발 사업비의 100%까지 계상할 수 있다. 다만,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.
- 마) 참여하는 기관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참여할 수 있다.
- 바)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

### <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>

세 목	세부 산정 기준	
내부인건비	구 분	세부 산정 기준
	연봉제 적용기관	▪ 연봉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
	연봉제 비적용기관	▪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
※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「월 평균급여액 × 참여기간 × 참여율」로 산정하여 적용		
외부인건비	구 분	세부 산정 기준
	외부기관에 소속된 자	▪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,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
	학생 연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박사이상 : 3,000천 원×참여기간×참여율</li> <li>▪ 박사과정 : 2,500천 원×참여기간×참여율</li> <li>▪ 석사과정 : 1,800천 원×참여기간×참여율</li> <li>▪ 학사이하 : 1,000천 원×참여기간×참여율</li> </ul>
	기 타	▪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</li> <li>※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</li> <li>※ 프리랜서의 경우 참여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,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탁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</li> </ul>		

2) 직접비 소요명세 (협력기관만 작성)

구 분	내 역	규격	단위	수량 (회수)	단 가 (천원)	금 액 (천원)	용 도	비 고
협력 기관 명 (1)	연구장비 ·재료비							
	연구 활동비	소 계			천 원			
	디자인 정보 조사비	소 계			천 원			
합 계					천 원			

구 분	내 역	규격	단위	수량 (회수)	단 가 (천원)	금 액 (천원)	용 도	비 고
협력 기관 명 (2)	연구장비 ·재료비							
	연구 활동비	소 계			천 원			
	디자인 정보 조사비	소 계			천 원			
합 계					천 원			

### <연구장비·재료비>

#### 가)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

- ① 해당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와 부수 기자재(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)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. (단,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)
- ②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기기·장비,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협력기관의 기보유 장비·시설 및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상기 ③의 경우,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.
- ⑤ 협력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%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.

#### 나) 재료구입비, 전산처리 및 관리비

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, 협력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, 협력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참여기관이 생산·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.

#### 다) 시제품 제작경비

협력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제품(디자인 Mock-up, 워킹 Mock-up 등) 등을 외주 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 다만, 협력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,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.

### <연구활동비>

#### 가) 출장여비

- ① 연구원의 국내·외 여비는 협력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② 협력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·외 여비는 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.

#### 나) 수용비 및 수수료

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·제세공과금 및 수수료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용, 위탁정산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. 다만,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, 차량 보험료,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.

#### 다) 전문가 활용비 및 디자인정보수집비

-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, 국내·외 교육훈련, 디자인정보수집비, 도서 등 문현구입비, 회의비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특허정보 조사비, 표준정보조사비, 표준화 활동비,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.
- ② 전문가활용비는 디자인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. 단,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·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,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.
- ③ 협력기관은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의 디자인역량강화계획에 따른 개발기간내에 실시 예정인 디자인관련 교육훈련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### <디자인정보 조사비>

#### 가) 디자인 정보조사(시장조사, 소비자조사 등 리서치)를 위하여 전문업체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.

\*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디자인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
## 8. 기업(기관) 현황 (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모두 작성)

가. 참여인력 현황 (기업명 : )

번호	성명	직위	생년 월일 (성별)	전공 및 학위				담당 분야	본교제 참여율 (%)
				국어	영어	전공	학위		
1			YYMMDD (남)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8									
9									
10									
11									
12									
13									
14									
15									

## 작성 요령

- '참여인력 현황'에는 과제책임자도 기재
- 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내용 중 담당 개발 내용을 명시
-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
- 본 과제 참여율 산정 방법
  -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%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
  - 다만,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    - ①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
    -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(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함)
    -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
    -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
-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
  -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
  - 국·공립연구소,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
  -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
-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 과제 수 :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(3책 5공) 적용함
  - 과제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
  -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(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)
  - 다만,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
    -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
    - ②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과제
    - ③ 총괄-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(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)
    -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
    -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
-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(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)

## 나. 기업(기관) 정보 현황

- \*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협약 해약 및 지원제외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\* 주관기관, 참여기관 각각 작성

주관기관	협력기관	※ 해당란에 ✓ 표시	
※ 기업명과 법적 지위(본점, 지점)를 기재 (예: (주)한국기업(본점))			
/	/		
※ 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기재 (예. 29351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)			
( - )			
※ 본 과제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재함 ※ 개발실적은 개발에 성공한 기술명 또는 수행 중인 과제명 및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※ 사업화 실적은 매출처, 판매수량, 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※ 기업의 견실성, 연구능력, 기술실시능력에 대한 과제책임자 자체평가 기재 ※ 신용거래 불량 여부 사전 확인 -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, 참여기업 대표의 신용거래불량이 확인된 경우, 완전자본잠식,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 참여 배제			

히든챔피언 후보기업 (WC300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글로벌 전문기업, 지역형강소기업)	(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,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)
희망엔지니어링금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	(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,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)
비수도권 소재기업 (본사) (서울·인천·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)	(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,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)
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선정기업 ('14~'15)	(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,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)

- 상기 표의 재무현황 데이터는 최근년도(2014년도)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

##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

사업명	
과제명	
주관기관명	
협력기관명	

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대표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주관기관명 :

대 표 자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협력기관명(1) :

대 표 자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협력기관명(2) :

대 표 자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

##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청렴 서약서

「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」과 관련하여 신청인(이하 “본인”)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- ① 본인은 전담기관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-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전담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,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-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- ④ 본인은 전담관기관으로부터 금품·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위 신청인 업체명 :  
대표자 : (인)

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